

안동여름물축제 물놀이장 임차 및 프로그램 운영 용역 과 업 지 시 서

2023. 6.





- 목 차 -

١.	행사개요	1
Π.	과업개요	1
III.	과업세부내용	2
IV.	시설 및 운영등 제시사항	3
٧.	과업수행지침	6
VI.	특별지시서	9
VII.	문의처	18



「안동여름물축제 물놀이장 임차 및 프로그램 운영 용역」 과 업 지 시 서

I 행사개요

- □ 행 사 명: 안동여름물축제^{가칭}
- □ 기 : 2023. 7. 28.(금) ~ 8. 6.(일) / 10일간
- □ 장 소: 안동시 성희여고 앞 낙동강변 (안동시 정하동 635번지)
- □ 주최주관: 안동시 / (재)한국정신문화재단

과업개요

 Π

- □ 용 역 명: 안동여름물축제 물놀이장 임차 및 프로그램 운영 용역
- □ 용역기간: 계약체결일로부터 ~ 2023. 8. 31.까지 ※ 과업종료 후 정산완료까지
 - 운영기간 : 2023. 7. 28.(금) ~ 8. 6.(일) 10일간
- □ 용역장소: 안동시 성희여고 앞 낙동강변 일원
- 용역예산: 금100.000.000원(금일억원) ※부가가치세, 대행료 등 일체 포함
- □ 계약방법: 제한경쟁입찰(협상에 의한 계약)
- □ 용역공고: 2023. 6. 13.(화) 부터 ~ 6. 22.(목) 까지
- □ 용역목적: 안동여름물축제 기간 중 여름철 가족을 동반한 시민들에게 아이・부모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건전한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자 물놀이장 및 물놀이 체험 콘텐츠 운영, 인력관리, 안전사고, 시설물, 교통 및 청소, 수질관리, 민원응대 등 물놀이장과 관련한 일체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탁하는 용역임
- □ 용역내용: 안동여름물축제 물놀이시설 설치·철거 및 운영 등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및 물놀이 체험 프로그램 운영



Ⅲ 과업세부내용

□ 과업범위

- 가. 안동여름물축제 물놀이장 설치·철거 및 운영 등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
 - 물놀이장(대형풀장 1개. 성인 풀장 2개. 롱슬라이드 1개) 설치
 - 안동여름물축제 의미와 목적에 맞는 콘셉트, 테마 설정 계획 수립
 - 낙동강변 행사장 환경 등 현장 여건에 맞는 물놀이장 제작 설치 운영
 - 물놀이장 상시 운영 관련 전반적인 관리 및 감독
 - 물놀이장 입장관리 및 탈의시설, 물품보관함 등 기타 편의시설 구비
 - 안전관리 계획(보험 가입 포함) 및 방역관리 계획 제출
 - 과업 종료 후 철거 및 철수하고 시설물 원상복구 등
 - 낙동강 수상 물놀이장 설치
- 나. 안동여름물축제 물놀이시설 장비 등 임차 및 시설물 전반 관리
- 다. 안동여름물축제 물놀이시설 운영 계획 및 디자인 계획
 - 물놀이시설 전반 디자인
 - 이용 안전 수칙 등 물놀이시설 이용 관련 일체 안내 및 홍보물 제작
- 라. 물놀이시설 운영을 위한 스태프 등 인력 운영
- 마. 워터캐논, 인공강우 등 워터 분사 효과 구현
- 바. 물놀이 콘텐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- 사. 기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업무
- □ 행사장 장소: 안동낙동강변 물놀이장 일대(주소: 안동시 정하동 635번지)



행사장 위치도



행사장 기본 배치도(아)

※ 유아물놀이장 경우, 기존에 설치된 낙동강변 물놀이장 시설을 이용할 예정임으로, 본 과업은 성인용 물놀 이장 임차 및 설치를 우선으로 함



시설 및 운영 등 제시사항

가. 장비사양, 설치방식과 규격, 모델, 수량, 사진자료 등 제시

나. 시설 및 운영 관련 세부내역(안)

IV

구분	세부사항	시설물 종류	비고
	물놀이장	- 설치규모(안) · 대형풀장: 1.2m(H)×20m(W)×30m(총길이) · 성인용: 조립식수영장 2개 정도	* 행사장 동선을 고려하여 시설물 배치 * 각 시설에 안전요원 배치필수
	수상 물놀이장	- 낙동강 수상 에어바운스 설치 * 제안사 제안	
	슬라이드	- 대형풀장 혹은 낙동강으로 이어지는 롱슬라이드 (후면 낙상 충격방지 시설 포함)	
시설	물분사장치	- 워터캐논(물분사)장치, 인공강우 등 * 제안사 제안	
부문	거품분사기	- 인체·환경에 무해한 거품 사용(옥수수오일 등)	
	운영시설	 운영본부를 설치해 실시간 현장파악 및 안전사고 대처 탈의공간 등 마련 물품보관함, 사물함을 1조 이상 설치하여 이용객들의 편의 제공 방송 장비 설치해 안전 등 안내 방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	
	기타시설	 수상놀이 용품 물놀이장 주변 본부, 휴게공간 등 여과기 펌프 안전을 위한 감시탑(망루) 및 계단설치 튜브 등 공기주입을 위한 시설운영(에어컴프레셔) 	
	물놀이장 운영	- 물놀이장 관련 전반 시설 관리 및 운영	
운영 부문	운영요원	[필수요원] - 총괄관리자 1인(소속직원) - 운영요원(현장근무자) 10인 이상 배치 ※ 안전 관련 법령에 맞춰 물놀이장 운영에 지장이 없도	- 근로기준법 등 준수하여 채용 - 휴무대체인력 확보



			※ 개장 5일 전운영요원 명단 제출(임무명시)
	안전사고 대비	- 행사안전보험, 체육시설 배상책임보험가입 (1사고당 3억, 1인당 1억 이상) - 매시간 점검 활동 실시(일지작성 및 주간보고) - 안전펜스 설치, 안전수칙표시판 설치 등 - 안전사고 및 환자 발생 시 대응 매뉴얼 구축 - 보행 공간에 미끄럼방지 대책 등 - 안전 관리자 선임 및 안전 검사 시행 - 야간 경비(폐장 후 물놀이장 방문 제한)	※보험증서 제출 (행사 관련자 및 관람객)
	운영 관련	- 물놀이장 세부 운영 매뉴얼 작성 및 운영계획 수립 - 개장시간 전 행사장 정비완료 - 운영시간 종료 후 행사장 및 주변 청소 실시 - 장소별 1회 적정 수용인원 및 총 이용인원 안내	
	물놀이 콘텐츠 프로그램	- 물놀이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전략 제시 ex) 물총싸움, 물풍선 터트리기, 버블싸움	
	정산 및 결과보고	 일일 입장 인원 관리 이용 만족도 조사 (500인 이상) 민원처리사항 보고 운영결과 보고서는 운영 종료일 30일 이내에 제출 (정산서, 이용객 현황, 사진 등 첨부) 	

- 위 사항을 기본으로 하되, 제안하는 사업 형태에 따라 일부 변경 제안 가능
- 본 행사가 종료되면 과업 수행사는 행사에 소요된 시설물, 장비 및 장치를 즉시 철수하여야 하며, 시설물의 변형 또는 변조 부분, 잔디, 수목, 바닥 훼 손 등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함
 - ※ 본 건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인·허가 및 신고사항(유기물 시설 신고, 수질검사, 안전점검 등 포함)은 설치 업체의 책임으로 필히 처리해야 함
 - ※ 상기 내용은 한국정신문화재단의 방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 - ※ 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사항은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령」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
 - ※ 안전관리는 「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9조의2」에 의거한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 의 안전·위생기준에 따라 상기 관리



다. 기타 홍보물 제작

- 1) 이용 관련 안내도 및 배너 제작(안전수칙, 이용방법, 최대수용인원 안내, 이용객 동선 등)
- 2) 물놀이 홍보 극대화를 위한 홍보 방향 및 마케팅 전략 수립

라. 안전관리

- 1) 운영 기간 동안 당사 재직 중인 과업 책임자를 지정하여 상시 현장에 상 주하게 하고 정기적으로 시설물 이상 유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, 시 설물 파손 시 신속한 안전 조치 및 정비를 실시하여야 함
 -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장을 이탈할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, 대체 책임자를 지정 배치하여야 함
 - 2) 현장관리자는 과업 책임자 이외에 별도로 반드시 1명 이상 배치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함
 - 3) 인근 경찰, 병원, 소방서 등 관련기관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사전 계획
 - 4) 시설물 등 관련해서 사전 안전점검을 완료해야 함
 - 5) 출연자, 관람객, 행사장 안전 및 재난 대책 등에 관한 사항(신고 등)
 - 이동 동선 안내 X배너 설치 및 운영요원 배치를 통한 참관객 안내
 - 순찰 및 부대시설 안전관리 방안 마련
 - 정기 소독 강화
 - 6) 현장에 배치된 인력들은 물놀이장 이용 시민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,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친절함과 예의를 갖추어 민원인과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해야 함
 - 7) 천재지변 시 대책에 관한 사항
 - 폭설 등 기상 여건에 따른 제설 장비, 자재, 비상 인원 긴급 동원 체계 등

마. 보험

- 1) 과업 수행사는 행사 관련자들에 대한 상해 보험을 가입하여야 함
- 2) 과업 수행사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보증보험은 물론, 관람객 등 상해 에 대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
- 3) 주요 입체형 시설물, 공공장소 등에 대한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보험 가입을 하여야 하며 일체 보험계약내용은 한국정신문화재단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



바. 기타

- 1) 청소(썰매장 주변 현장정리 등) 및 오폐수처리를 포함하는 위생관리
- 2) 회계 처리 및 기타 한국정신문화재단이 지정하는 사항 등
 - ※ 위 사항 중 한국정신문화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내용은 변경할 수 있음

V 과업수행지침

가. 과업 수행 지침

- 1) 과업수행 기본방향
 - 물놀이장은 구조적으로 안정적이면서 침하나 변형이 되지 않도록 견고 히 설치하되, 행사장 주변 경관과 조화가 되도록 디자인한다.
 - 구조물을 이용한 물놀이장 설치는 설계도면에 의하고 구조물 배치는 사전에 한국정신문화재단(이하 발주처)과 '과업수행사'가 협의하여 '발주처'의 승인 후 설치한다.
 - 안동여름물축제 물놀이장 관련해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.
 - 본 과업에 투입되는 장비 및 설비 등은 최신 기종을 우선하여 천재지 변에 대비해 공정별 장비관리계획 및 안전관리 대책을 제출한다.

2) 일반사항

-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추진 일정 및 계획에 대한 착수보고 후 과업을 추진해야 한다.
- 본『제안요청서』에 명시된 모든 조건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업수행자는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.
- 용역의 취지 및 중요성을 고려하여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,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.
- 제안서의 총 사업비에는 제세(부가세 등), 인건비, 제작료, 임차료 등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한다.
- 용역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검증과 구조계산서 등 제반 수수료는 과업



수행자의 부담으로 처리한다.

- 과업수행자가 본 과업으로 인하여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배상 또는 책임의 의무를 진다.
- 과업수행자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타인의 상표권, 특허권, 판매권, 저작권 등 지적소유권 사용으로 인한 소송이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.
- 과업수행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참여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(수당 등 포함)을 지급해야 하며,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,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다.
- 과업수행자는 행사기간 중의 사고로 행사장에 설치된 경관 조형물, 시설물, 편의시설 등에 생긴 재물손해, 행사진행요원 및 국내·외 출연진, 근로자, 관람객 등 제3자의 인명피해, 시설물 설치, 운영, 철거 시 일어나는 사고(전기포함) 등 행사 관련 사고를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
3) 보안사항

-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기간 등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과업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, 대표자와 참여자의 보안 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- 과업수행으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며,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허락 없이 계약 대상자가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.
-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,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이나 타 기관에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, 과업수행자는 자료의 외부유출로 인한 민·형사상의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.

4) 사업의 시행

• 과업수행자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계획서에 따라 시행한다.



- 과업수행자는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관계법규 및 발주처의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과업수행자는 행사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여 성실 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
- 발주처는 과업수행자의 사업운영이 적절하지 않거나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- 과업수행자는 시설물(전기 포함)을 완벽하게 설치하고,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, 과업수행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.

5) 과업내용의 추가, 변경 및 해석

- 과업수행자는 과업내용 중 발주처가 경미한 사항의 수정 또는 추가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.
-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과업변경요청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, 승인을 득한 후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.
 - 과업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경우
 - 주요 과업내용을 추가·삭제하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
 - 발주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
-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, 발주처에서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, 과업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범위, 과업내용, 비용 등을 변경 또는 정산 처리한다.
- 과업지시서 등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.
- 계약상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,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결정에 따른다.

6) 기타사항

• 본 과업의 수행은 발주처와 사전 업무협의를 통해 사업의 목적을 충분 히 숙지하여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수행하여야 한다.



-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의 변경이나 조정, 문제점이 있을 경 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.
- 과업수행자의 과업책임자 및 담당자가 변경될 때에는 사전에 그 내용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, 변경자는 과업사무의 인수인계를 철저히하고 과업수행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.
- 용역 중 결함이나 수정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즉시 보완·수정·변경하여야 하며, 관련내용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.

VI 특별지시서

가. 물놀이장 임차, 설치 및 운용

- 강풍 및 강우 등 천재지변에 대비하여 안전성을 고려한 설치 및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설치된 시설물 파손 등이 발생할 시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.
- 제작·설치 시 디자인 등은 최종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, 변경 요청이 있을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.
-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구성 및 설치되어야 한다.
 - 안전매트: 활강구간 양측면 및 정지구간에 규격에 적합한 안전매트를 설치하여 이용자가 안전하도록 해야 함
 - 보행로 : 매트를 설치하여 안전, 미끄러움을 최대한 방지해야 함
 - 슬라이드 구조물 관리: 수시로 슬라이드 상태 점검 및 수평을 유지해야 하며, 시설물 훼손 시 즉시 교체하고, 운영기간 동안 슬로프의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윤활제 사용 등 물놀이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함
-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장비 및 목록에 표시되지 않은 과업 등은 감독관이 요구하면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축제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
- 「전기공사업법」제11조(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)에
 따라 전기공사는 발주처에서 분리발주 진행하나 사업에 소요되는 물품
 시설에 대한 구입 및 임차는 제안사에서 진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



제5조(경미한 전기공사 등)는 과업수행자가 진행한다.

• 물놀이장은 시범운영 및 테스트롤 고려하여 2023. 7. 26.(수)까지 설치하여 감독관 입회하에 설치물에 대해 테스트를 받아야 하며, 철거는 폐기물을 포함하여 완벽하게 처리하여야 한다.

나. 인력운용 계획

- 물놀이장 및 물놀이 프로그램 운영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인력운용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서를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- 물놀이장에 반드시 확보 근무하여야할 최소한 인력은 아래와 같으며, 모든 인력은 정 위치에서 근무하여야 하고 인력의 휴가 및 보상 등으로 결원 발생 즉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대체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.
- 아래 인원은 최소 인력을 정한 것이며, 이용자가 많을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추가 인력을 확보하여 이용자의 안전과 서비스에 문제가 없 도록 하여야 한다.
- 인력운용계획서에는 용역책임자(총괄) 1명을 포함하여 각 분야별 책임 자 지정 및 분장사무를 작성·제출하고 행사장에 상주하여 운용되도록 하 여야 하며, 용역책임자는 설치, 운영, 안전 등 전반을 총괄 관리·운영하 여야 한다.

계	관리(시설) 팀장	안전 관리자	운영요원	간호 요원
13	1	1	10	1

1) 필수확보인력

안전관리자 및 간호요원은 각각 아래 조건 중 하나를 갖춘 자로서 용역 착수 전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현장배치 하여야 하며, 물놀이장 이용객 의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.

- 가) 안전관리자 : 인명구조요원, 응급구조사 자격증1·2급, 수상인명구조 원 수료증, CPR자격증, 응급처치법 수료증 발급자 등
- 나) 간호요원 :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,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과한 규칙에 따른 간호조무사
- 2) 그 외 인력은 현장여건과 방문인원에 따라 유동적으로 업무를 변경·



지시할 수 있다.

다. 안전관리 대책 수립

- 안전관리는 「관광진홍법 시행규칙 제39조의2」에 의거한 물놀이형 유 원시설업자의 안전·위생기준에 따라 상시 관리한다.
- 계약상대자는 물놀이장 이용객의 안전사고 방지 및 인명피해 예방, 폐장 후 안전사고 방지 등 물놀이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총체적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, 안전요원이 할당한 구역 내에서 부상자를 신속하게 발견하여 응급처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이용자 안전관리계획, 안전요원 교육프로그램 및 안전 모니터링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물놀이장 근무 요원은 근무태만으로 인한 이용객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한 근무태세를 확립하여야 한다.
- 계약상대자는 주야 24시간 사고 예방활동을 하여야 하며, 사고 발생 즉시 응급처치 및 환자이송을 하여 인명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, 사 고발생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수영장별 입수객 이용기준(동시수용 가능인원, 풀장별 키 제한 등)을 마련·운영하여야 하며, 기준 및 방법은 발주처와 협의 후 운영토록 한다.
- 계약상대자는 이용객의 낙상에 대비하여 수영장 및 워터슬라이드 주변에 충격을 충분히 완화 할 수 있는 충격 완화재를 반드시 시공하여야하며, 미끄럼방지를 위하여 물놀이장 바닥 전체에 인조잔디 등 매트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.
- 각 풀장에는 깊이를 알 수 있도록 수심을 표시하여야 한다.
- 계약상대자는 물놀이장 주변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, 안전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.
- 계약상대자는 물놀이 시설 운영 중 안전사고에 대비 안전근무요원 배 치하여 개장 7일 전까지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, 시설물을 완벽하 게 설치하고,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,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.
- 계약상대자는 물놀이장 이용자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내문, 현수막을 이용객들이 쉽게 식별 할 수 있도록 물놀이장 전역에 설치하여야 하



며, 물놀이장 전역에 각종 사항을 명확히 안내 할 수 있는 방송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.

- 분전함은 물기가 없는 건조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, 시건장치를 필 히 하여야 한다.
- 여과기, 에어모터 등 돌출되어 설치된 시설물은 안전가드를 설치하고, 에어모터는 바닥에서 일정 높이를 띄워 설치하여야 한다.
- 안전검검 시 지적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사전 운영일까지 조치한다.
- 계약상대자는 이용객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물놀이 장에 간호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.다.
- 긴급상황 등의 발생에 따른 대응 방안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물놀이장 관련 책임보험은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, 행사기간 내 시설물 보수, 운영요원 등 안전관리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.
- 물놀이장 설치 및 운영, 철거 중 발생하는 사건·사고에 대하여 과업수행 자가 민·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. 다만, 과업수행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라. 수질관리

- 야외 물놀이장 수질은 「관광진홍법 시행규칙」제39조의2에 의거한 물놀 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·위생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수질검사는 「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」제3조 및 제4조 제2항에 따라 아래의 기준으로 매 2시간마다 실시하여야 하며, 물의 순환 횟수, 수질검사 일자 및 수질검사 결과 등을 게시하여야 하고, 관리 일지를 작성하여 비치·보관하여야 한다.
 - 1) 유리잔류염소는 0.4mg/l에서 2.0mg/l까지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오 존소독 등으로 사전처리를 하는 경우의 유리잔류염소농도는 0.2mg/l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.
 - 2) 수소이온농도는 5.8부터 8.6까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.
 - 3) 탁도는 2.8NTU 이하로 하여야 한다.
 - 4) 과망간산칼륨의 소비량은 15mg/l 이하로 하여야 한다.
 - 5) 각 풀의 대장균군은 10밀리리터들이 시험대상 5개 중 양성이 2개 이하이어 야 한다.



- 계약상대자는 수질 관리를 위해 물놀이장의 욕수(浴水)는 1일 3회 이상 여과기를 통과하도록 하여야 하며, 풀당 여과기를 설치·운영하고 기당 여과능력이 24ton/h 이상의 것으로 한다.
- 욕수 오염도에 따라 회수를 변경할 수 있으며, 계약상대자는 욕수 교체 시 수영장 내부 침전물 등 오염물질을 청소하는 등 수질 관리에 만전 을 기한다.
- 유행성결막염, 전염성피부병 등 환자는 수영장시설 이용을 제한한다.
- 수영장 내로 음식물 반입을 금지시키고 기타 이물질이 수영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수영장, 놀이기구, 부대시설 등의 수시 청소를 실시하여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한다.
- 계약상대자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풀장정원, 물놀이장 동시 수용인원, 물의 순환 횟수, 수질검사 일자 및 수질검사 결과 등을 게시 하여야 한다.

마. 시설물 관리 및 철거

- 물놀이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·시험운행 기한은 운영일 1일 전으로 한다.
 - 1) 물놀이장내 배관·전선 등은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설치한다.
 - 2) 물놀이시설은 규격서를 참고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안한다.
 - ※ 규격서에 있는 시설 그대로 제안하는 것은 불가하며, 반드시 독창적 설치·운영계획 수립
 - ※ 규격 및 설치 위치 등의 변동이 필요할 시에는 최종설치 전에 반드시 발주처와 협의
 - 3) 물놀이 시설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 모든 시설은 설치기한 내 해당 기능이 완벽 하게 동작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, 미비사항 발견 시 개장일 까지 반드시 교체하여야한다.
-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과업을 착수하고 진행과정을 수시 보고 하여야 하며, 최종설치 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.
- 계약상대자는 수영장 개장 전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설치 후 시운전을 실시하고 관련 시설물을 정비한다.
- 계약상대자는 물놀이장시설물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지상태 이완상태를 철저히 점검한다.
- 물놀이시설의 운반, 설치, 보수, 철거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.



- 계약상대자는 물놀이시설 설치에 따른 각종 인허가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, 운영·관리에 필요한 제반관리사항(유기기구검사·신고 비용, 유류비, 소모품 등) 일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·추진한다.
- 물놀이장 시설의 설치 전, 사양 등 제품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, 설치 현장 도착 후 감독관의 검수 확인 및 지시에 따라 지정장소에 하역하 고,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급수·배수, 전기, 안전시설 등을 시공하여 사 용적격 여부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.
- 물놀이장 시설의 사용적격 여부는 감독관의 지정 위치 설치여부, 각종 시설의 정상작동 여부 등 검사에 의한다.
- 발주처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계약사항(설치기간, 장소 등)에 변동이 필요한 때에는 쌍방 간 협의하여 계약변경이 가능하며, 과업시행자는 발주처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.
- 계약상대자는 물놀이장 설치장소 바닥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해 시설물 설치에 따른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, 파손 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.

바. 물놀이 프로그램 운영

• 물놀이 콘텐츠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여야 하며,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

사. 과업의 수행방법

- 시설물 운영상 세부사항
 - 안전사고 방지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해 주·야간 전체에 대하여 관리를 실시하고 운영상 예상되는 미비사항 및 문제점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을 실시한다.
 - 전기시설물에 대한 누설전류 등 안전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감전사고 등 안 전사고 방지에 철저를 기한다.
 - 물놀이장 시설 및 주변 청결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청소를 실시하며 필요시 충분한 일광소독으로 전염병을 예방한다.
 - 탈의실, 물품보관함 등은 하절기 계절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 등 이용객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청소하여 최상의 상태를 유지한다.
 - 용역기간 중 물놀이시설 및 부대시설의 손·망실 시(자연재해 포함) 즉시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, 보수에 3일 이상 시일이 소요될 경우, 사양이 동등



한 시설로 당일 이내 대체 설치하여야 한다.

- 계약상대자는 물놀이장 설치장소 바닥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해 시설물 설치에 따른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, 파손 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.
- 물놀이장 안전을 위한 펜스 및 그물망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, 물놀이장 시설 의 구조 및 사양이 발주처의 의견과 다를 경우 또는 노후 되었을 때는 교체 요구 시 순응하여야 한다.
- 운영상 세부사항
 - 용역지침
 - 1) 환자 발생 시 응급조치 실시 후 병원까지 즉시 후송 조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조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.
 - 2) 여과기의 이상 유무를 상시 확인하여 매일 양호한 수질을 유지 하도록 하여야 한다.
 - 3) 집중호우로 인하여 담수 또는 혼탁수가 유입되면 감독관에게 보고 후 욕수교체 및 바닥 물청소를 실시한다.
 - 4) 수영장 시설물 바닥 및 벽면은 침전물·오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중 청소기를 사용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하도록 한다.
 - 5) 물놀이장 시설 운영 관련 인력은 수질관리, 안전관리, 물놀이시설 및 부대 시설 관리 및 청소 등을 실시하며, 이용객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련 시설들을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한다.
 - 6) 물놀이장 내 수질오염이 예상되는 음식은 수질관리상 물놀이장내 반입을 금지하도록 이용객들에게 계도를 실시한다.
 - 7) 현장 관리 인력은 통일된 복장을 착용하고, 고정 배치하여 매일 물놀이장 및 물놀이장 시설 주변 등에 대하여 수질관리, 안전관리, 청소 등의 전반적인 관리를 실시한다.
 - 8) 개장 중인 물놀이장에는 간호(조무)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한다.
 - 9) 기상예보에 집중호우, 태풍 등 특보발효 시 시설물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조치하고 기상예보 해제 시 즉시 복구한다. (파손 및 분실 시 계약상대자 책임)
 - 10) 수영장 욕수 배수는 반드시 지정된 배수로에 배출하도록 한다.
 - 11) 야간 근무 시 근로자 안전에 유의하며, 물놀이장 현장에 취객 등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고, 안전관리 및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처리하고 발주처에 즉시 보고하다.
 - 12) 물놀이장 운영일지는 매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.(입장객, 근무상 태, 청소상태, 특이사항 등 운영관련 일체 세부사항 기재)
 - 13) 물놀이장 운영관리



- 가) 운영관리 : 용역기간 중 24시간
- 나) 개장 전 내부청소, 주변 정리 : 10:00 12:00
- 다) 이용객 개장 시간 : 12:00 22:00단, 낙동강변 수중물놀이 경우 20:00 제한
- 라) 수영장 안전관리 및 환경정비 : 상시관리
- 마) 폐장 후 내부청소, 주변 정리
- 바) 야간순찰(안전사고방지 및 시설물 보호관리 등) 및 야간민원사항 처리 : 폐장 정리 후 ~ 익일 개장준비 전
- 14) 물놀이장 주변 행사 및 특별한 사유가 발생 시 감독관에게 선보고 후 지 시를 받아 신축적으로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
- 15) 열대야 지속 및 이용자의 수요가 있어 운영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간을 연장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.
- 16) 계약상대자는 [별지 1] 서식에 따른 운영일지를 매일 작성하여 감독부서의 확인을 받으며, 사고발생 즉시 감독부서에 유선보고 후 [별지 2] 서식에 기재하여 감독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.
- 17) 기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.
- 우천 및 태풍 등 기상특보 발효 시 기준
 - 1) 우천 시는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개장 상황을 점검한다.
 - 2) 국지성 비에 대해서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운영을 지속한다.
- 운영관리 결과에 의한 사후정산
 - 1) 천재지변에 따라 장기간 수영장 미개장시에는 용역비를 정산할 수 있다.

아. 사업비 집행 및 유의사항

- 1) 사업비 집행방법
 - 본 용역에 대한 전용계좌를 개설하여, 발주처의 요청 시 『거래내역 및 증빙자료』를 제출해야 한다.

2) 유의사항

- 제안 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
 - 발주처는 당해 제안서를 무효처리할 것이며, 선정 후에라도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.
 -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. 이때 제반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한다.
 - 발주처는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에 정확성을 기하였



으나, 각 제안사는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제안요청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 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.

-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 해야한다.
- 용역의 범위는 제안사의 업무에 규정된 업무 전체로 한다.
- 과업 수행 전반에 걸쳐 제안 요청기관 및 해당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.
- 3) 과업의 변경조건 및 계약기간의 연장
 - 과업의 변경조건
 - 발주처의 사항에 의한 계획 변경으로 과업의 범위가 증감되거나 과업 수행 중 불가피한 과업연기,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처와의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.
 - 본 과업 수행 중 과업내용의 변경요인이 발생하거나 계약금액 결정에 명백한 하자 또는 착오 발견, 기타 계약금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처와 별도 협의 후 정산한다.
 - 과업수행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관계기관 협의 지연 및 각종 심의 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과업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, 발주처는 사업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사업 중지기간은 과업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.
 - 계약기간의 연장
 - 발주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용역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 -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연장할 수 있다.
 -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연장할 수 있다.

자. 과업보고

- 1) 착수계 제출: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
 - 착수계
 - 과업수행 계획
 - 사업수행 세부 추진 일정표(용역공정예정표)



- 사업수행 계획서(사업수행 상세과업내역) 및 세부절차
- 예산계획 내역서
- 인력운영 계획 및 기타사항
 - 용역수행 조직도 및 사업수행 인력투입 현황
 - 발주처가 요구하는 서류 일체
- 2) 과업 추진별 보고 및 제출
 - 물놀이장 설치철거 및 운영 용역 기획 및 제작 과정 수시 보고
 - 단계별 점검회의: 계약일로부터 착수, 중간, 결과보고회 개최
 - 과업과 관련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상 후 협의
- 3) 기타사항: 본 과업 수행에 기타사항은 관련법에 근거하여 처리
- 차. 성과품 제출(용역완료일까지 제출 및 보고)
 - 완료계
 - 결과보고서
 - 용역수행 최종 결과보고서(한글파일 형식)
 - 운영자료 일체
 - 사업수행 관련 자료 일체
 - 발주처가 요구하는 서류 일체
 - ※ 과업파악, 점검 등을 위하여 발주처의 요구 시 요청자료 즉시 보고
 - ※ 보고 시 도출된 보완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성실히 반영하고, 보고에 수반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의 부담
 - ※ 최종 보고 시 민원사항, 사건·사고 및 처리사항 등을 포함하여 제출

VII 문의처

- 가. 제안서 등에 관한 사항: 한국정신문화재단 축제콘텐츠팀(☎054-840-3423)
- 나.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시항: 한국정신문화재단 경영지원팀(☎054-840-3416)